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20

인 천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3구합115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 고 [redacted] 유한회사

피 고 [redacted]광역시 [redacted]구청장

변 론 종 결 2016. 4. 29.

판 결 선 고 2016. 5. 20.

주 문

1. 피고가 2013. 9. 9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6,674,070원, 지방교육세 9,905,200원, 농어촌특별세 5,169,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20

가. 원고는 2010. 12. 1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, 2011. 3. 29. [redacted]은행으로부터 [redacted]구 [redacted]동 [redacted] 토지 및 그 지상 건물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2,106억 원에 양수하였다.

나.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1. 6. 2.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.

다.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(2013. 1. 1,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법'이라 한다)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한 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를 신고·납부하였다.

라. 피고는 2013. 9. 9.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106,674,070원, 지방교육세 9,905,200원, 농어촌특별세 5,169,79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(이하 '이 사건 납세고지서'라 한다)에는 각 세목별 과세표준,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,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나. 판단

1)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, 제55조 제1항,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20

의 각 규정에 의하면,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,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, 납세자의 주소·성명, 과세표준액, 세율, 세액, 납부기한, 납부장소,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,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,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,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,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(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8두5773 판결 등 참조).

그리고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,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,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(대법원 2012. 10. 18.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

2)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1호증, 을 제2,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, 지방교육세,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6-20

농어촌특별세(이하 '취득세 등'이라 한다)의 세액과 취득세의 과세표준,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그 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, 취득세 등의 세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, 취득세 등을 구성하고 있는 각 본세와 그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, ② 또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에 "토지 + 건물 [redacted]동[redacted]번지 외 2건 경락공매"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과세대상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,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에는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,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 세목별 과세표준, 적용 세율 등을 일부 누락하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.

3)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태훈

판사 박용근

판사 황여진